

주무관	여성단체협력팀장	여성정책담당관	여성가족정책관	행정1부시장
문서번호	여성정책담당관-115483			
보존기간				
결재일자	2011. 12. 14.			
공개여부	비공개			
방침번호	행정1부시장 방침 제10330호			
협 조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재기획과장 조사담당관</p>			

직장내 성희롱 · 성차별 방지조치 강화계획

2011. 12

여성가족정책관
(여성정책담당관)

직장내 성희롱·성차별 방지조치 강화계획

직장내 성희롱·성차별 방지조치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창구 마련 및 사건해결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방지조치를 강화하고자 함

※ 시장지시사항('11.12.1 성희롱방지 추진현황 보고서)

I 추진현황 및 문제점

추진 근거

-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(고용평등), 제17조의2(성희롱의 방지 등)
-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(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)

추진 현황

-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 : 시본청, 사업소, 자치구, 투자출연기관
 - 시본청 : 여성가족정책관(당연직)외 여성가족정책관 추천 2명과 노초추천 3명
(임기 : 2년, '11. 12. 1 ~ '13. 11. 30)
 - 기 능 : 성희롱 사안 발생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심의
 -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: 시본청, 사업소, 자치구, 투자출연기관
 - 시본청 : 사이버성희롱신고센터 운영(행정포털)인사)성희롱고충전담창구내)
 - 구 성 : 남·녀 각 1인의 고충상담원 지정
 - 각 기관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: 연1회 이상
 - 교육대상 : 시본청·사업소, 자치구, 투자·출연기관
 - 교육내용 : 성희롱의 개념, 관련법령, 관리자의 역할 등
 - 교육방법 : 시청각 강의, 내부직원 강의, 전문가 강의 등
- ※ '찾아가는 성희롱·성매매 예방교실' 실시 : 상황극으로 형식성 보완

□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문제점

○ 성희롱 실태와 신고건수의 격차

- 직장내 성희롱이 있다는 의견은 많으나 실제 신고건수는 저조

※ 직장내 성희롱사건 신고현황 (최근 3년)

구 분	'09	'10	'11
합 계	2	3	3
서울특별시	-	1	-
자 치 구	1	1	2
투자·출연기관	1	1	1

※ 사건개요 및 조치현황 : 별첨 1

○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주체가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져 전문성 미흡

- 성희롱 고충상담원,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

○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미비

-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미 실시
-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심리 및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부재

○ 성희롱 교육의 실효성 미흡

- 5급 이하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어 4급 이상 간부 교육참여 저조
- 각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향

○ 서울시생활체육회 등 사실상 산하기관 성격의 단체에 대한 방지조치

추진실태 감독기능 부재

II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계획

□ 추진방향

- 여성가족정책관과 직원간 Hot Line인 성희롱·성차별 고충상담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고충직원 상담 강화
-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성희롱 방지조치 전문성 확보 및 상담과 사건조사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
- 성희롱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도입
-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시 산하기관까지 확대 실시

□ 추진계획

① 여성가족정책관 Hot Line 개설

- 대 상 : 시본청, 사업소 직원
- 내 용 : ‘성희롱’ 과 ‘성차별’ 분야를 포함하는 관련 고충상담 및 소통의 장
- 운영방법
 - 행정포탈 내 ‘성평등상담소’에 여성가족정책관 이메일 송부시스템 개설
 -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 여성가족정책관 검토·답변 및 관련 조치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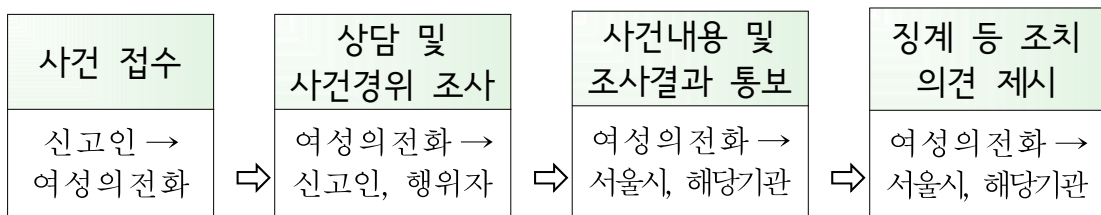
성희롱·성차별 관련 익명상담코너 운영

- 대 상 : 시본청, 사업소 직원
- 운 영 : 행정포탈 ‘성평등상담소’ 내 운영, 공개여부 본인 선택 가능
- 내 용 : 직원들의 상담 내용에 대해 성희롱고충상담원이 답변 처리
 - ※ 필요시 전문상담원 답변처리 : (사)한국여성의전화 상담원 등
- 효 과 : 동일한 고충을 가진 직원들의 상담사례 공유 및 신고전 해결방안 강구, 신고 활성화를 통한 예방효과

2 (사)한국여성의전화 직통 고충전담창구 운영

- 대 상 : 시본청, 사업소, 자치구, 투자출연기관 직원
- 추진개요
 - 행정포탈 '성평등 상담소'에 (사)한국여성의전화 이메일 상담 시스템 설치
 - (사)한국여성의전화 내 상시 전담인력 배치 : 1명
 - ※ 시범운영 실시 후 사건발생 건수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인력 조정
 - (사)한국여성의전화에 서울시 직원들의 성희롱·성차별 사례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·조사권 부여
 - ※ 행위자 조사가 어려울 경우는 조사담당관에서 조사 협조
 - (사)한국여성의전화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독립성 보장 :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
 - 사건 신고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담은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즉시 보고
 - 상시 상담 결과는 월별로 신고인 및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상담 건수 등 대략적인 내용만을 보고
 - (사)여성의전화 추천 외부전문가를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: 1명

○ 추진절차



- 결과조치 : 조사담당관으로 사건 전황 및 상담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통보
- 운영방법 : 성폭력 등 관련 상담 및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있는 (사)한국여성의전화와 협약 체결

※ 2012년 여성발전기금 자체사업 활용

○ 직원 안내 및 홍보

- 행정포탈 메인 화면 롤링배너 게재(1개월), 시업무공지 게시

③ 성희롱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도입

- 대 상 : 시본청, 사업소, 자치구, 투자·출연기관 직원
 - 피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
 - 기 관 : (사)한국여성의전화
 - 내 용 : 피해자 비난 없애기, 억압된 감정 표출하기, 자기통제권 찾기 등
 -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
 - 기 관 : (사)한국여성상담센터 등(성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실시기관)
 - 내 용 : 성희롱 개념 재정립, 행위의 책임 인정하기, 피해자 상처 공감하기 등
- ※ 자치구, 투자출연기관의 경우는 필요시 해당기관 예산으로 집행
- 운영방법 : 전문가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

④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

- 간부직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별도 실시 : 연 1회
 - 정례간부회의, 간부대상 아침특강과 연계하여 실시
- 市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성희롱예방 교육과목 신설
 - 5급 승진리더과정(5급 승진예정자 의무교육)중 1시간
-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 실시
 - '11년도 '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실' 미실시 기관 및 부서 우선 실시
 - 투자·출연기관 중 방지조치 부진기관 및 성희롱 사건 발생한 산하기관

5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실태 점검강화

- 12~1월중 각 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실태 특별점검 실시
 - 내 용 : 기본계획 수립, 전담창구 운영, 상담원 지정, 예방교육실시 등
 - 조 치 : 부진기관의 경우 '12년도 철저한 이행 촉구 및 진행사항 감독
 - 시 산하기관적 성격의 단체에 대한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실태 감독
 - 대 상 : 서울시생활체육회, 서울시체육회 등 산하단체
 - 방 법 : 해당단체 보조금 지급 및 감독부서에서 투자출연기관에 준하여 성희롱 방지조치 실태 파악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
- ※ 해당단체에 대해서는 (사)한국여성의전화와 연계하여 '12년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우선 실시

III 소요예산

일반회계 : 17,500천원

- 성희롱 예방교육(상황극) 강의료 : 750천원 × 20회 = 15,000천원
- 성희롱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: 300천원 × 3회 = 900천원
- 성희롱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: 1,000천원
- 사무관리비(현수막, 수당 등) : 600천원

여성발전기금(자체사업비) : 24,000천원

- 성희롱 예방교육 : 120천원 × 50회 = 6,000천원
- (사)한국여성의전화 전문상담인력 인건비
: 1,500천원 × 12개월 = 18,000천원

IV

행정사항

여성정책담당관

- (사)성희롱 고충전담창구 홈페이지 변경 : '11. 12
 - 여성가족정책관 Hot Line 및 외부고충전담창구 신설
- (사)한국여성의전화와 협약체결 : '11. 12
- 서울특별시 성희롱예방지침 개정 : '11. 12
- 시본청, 사업소, 시 산하기관 등 교육일자 접수 및 조정 : '12. 2

조사담당관 : (사)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성희롱사건 조사시 협조

시본청, 사업소, 투자출연기관

- 성희롱 방지조치 완료 및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결과보고 : '11. 12
 - 기본계획 수립, 고충전담창구 설치 및 상담원 지정,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

인재개발원

- 2012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성희롱예방 교육시간 신설 : '12. 1

정보화기획담당관

-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홈페이지 수정 및 배너제작 : '11. 12